

# 규정심의위원회규정

|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제정    | 2012.02.10 | 1차 개정 | 2014.04.01 |
| 2차 개정 | 2014.05.05 | 3차 개정 | 2015.02.01 |
| 4차 개정 | 2018.06.01 | 5차 개정 | 2018.09.10 |
| 6차 개정 | 2020.02.17 |       |    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제 규정을 심의하기 위한 우송정보대학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6.1., 2018.9.10>

③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팀장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0.2.17.>

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우송정보대학 제 규정의 제·개정
2. 교육관련 규정의 조사 연구
3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4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안건제출)** ①규정을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하게 한다.

②삭제

③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제안설명)** 규정(안)을 제출한 각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결과보고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정을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